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164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1646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단9950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4.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단9950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3,255,221원, 선정자 K에게 101,773,087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255,221원, 선정자 K에게 98,173,087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위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박성규, 판사 설정은
별지

1) 청구취지와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 중 각 선정자 K 부분을 대조하면, 항소취지의 실질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로 선택되지만, 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대로 항소취지를 쓴다.